

<토론 요지>

李允榮(사회자·韓國法學教授會 會長) : 두분의 발표를 감사히 들었다.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梁承圭 서울대학교 교수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다.

梁承圭(서울大 法大 教授) : 두분 발표자의 우리나라 司法試驗制度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상세한 발표에 기본적으로 동감하면서 토론자로서 간단히 몇가지 이야기하겠다.

먼저 司法試驗令으로 할 것인가 司法試驗法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인 해결이다. 우리나라가 法治國家의 면모에 충실하지 못한 하나의 예가 司法試驗令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試驗主管處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관부서였던 총무처가 여러문제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면에서는 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부서로의 이관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주관처는 총무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選拔人員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조인, 교수, 응시자가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기인하는 주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인구와 法治行政 내지 法의 支配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의 선발인원인 300명선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應試資格制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학교육제도가 있고 법학교육이 행해지고 있는데, 法學教育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수준의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도 어긋나며 人力과 教育의 낭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응시자격은 法科大學 卒業者 혹은 卒業豫定者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應試科目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결코 즉흥적이어서는 안되며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國民倫理나 國史와 같은 이른바 國策과목은 제외되어야 하리라고 보며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과목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교수의 발표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2차의 필수과목을 1차에서도 필수로 할 필요가 있는가, 외국어는 2·3개씩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며, 선택과목 중 法律과목 이외의 과목을 적어도 하나는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試驗委員의 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와 채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총무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金尙哲(辯護士) : 토론자는 변호사이자, 고시잡지의 발행인이고, 오늘의 모임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이며, 또한 이 학술대회는 총무처 용역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司法試驗制度에 있어서 類似法律職의 자격과 法曹人의 자격의 혼선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가 드문 세무사, 관리사, 노무사, 사법서

사 등의 법률직종에 일정한 法律 기초과목에 대한 지식 없는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최고수가 지적인 法理士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司法試驗令에 의해 司法試驗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크게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憲法은 法官의 資格을 法律로 정하게 하고 있는데, 法院組織法은 법원의 조직만을 규정할 뿐, 法曹人資格에 대한 규정은 아무런 母法에 근거가 없이 사법시험령으로 되어 있다. 이는 國家公務員法과 관련하여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主務管廳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관료성을 고려하고 機關利己主義를 넘어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司法試驗은 공무원 임용시험이 아니라 司法研修院入院試驗이고, 司法研修院은 大法院 소속이며, 그 졸업생은 검사를 제외하고는 행정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임용·충원을 그 주된 관심사로 하는 총무처에 법조인 자격의 관장업무를 맡기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法律體系와 관련하여 매우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며, 司法試驗의 행정업무적 성격을 고려하여 法務部에 그 관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때에도 현재와 같은 관료적 명령·복종의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司法試驗委員會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應試資格과 試驗科目에 대해서는 발표자인 최고수의 견해에 동감한다.

試驗委員에 대해서는 그 선정상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먼저 현재의 응시인원에 비추어 보아 그 증원이 요구된다고 보며, 현재의 선정방식은 그 객관성담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委員會制度로 바꾸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合格者數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하리라고 본다. 최근 司法試驗 合格點이 50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이유에서건 수험생들이 질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채점위원들이 점수를 박하게 주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또 한편으로 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선발예정인원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탈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김상철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 법대학장 한상범 교수의 토론을 들도록 하겠다.

韓相範(東國大 法大 學長): 평소에 생각한 문제점을 솔직히 제기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司法試驗이 資格試驗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바로 판·검사가 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10년 정도의 변호사생활 후 능력이 인정된 사람을 판·검사로 임용해야 할 것이며, 이 점이 해결되어야 司法試驗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본다.

司法研修院 敎育에서도 法律 이외의 과목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며 日本의 判例와 法

만을 다루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미법, 대륙법 등 다양한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3次試驗은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시험위원을 해 본 경험에 따르면 3次試驗에서 탈락시키기는 어려우며, 결국 성적순에 따라 合格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는 資格試驗의 성질을 고려할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司法試驗令은 이를 法律로 대체해야 하며, 主務管廳의 문제는 지난 40여년의 경험을 고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하리라고 본다.